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병역미필자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따라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 중 병역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입법예고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사람으로서 현역,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(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)을 경사 이하인”을 “사람을 경사 이하의”로 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재난 등의 경우 시험의 연기·변경)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험실시권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·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38조제4항 본문 중 “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”을 “경력경쟁채용시험등”으로, “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”을 “제34조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정책담당관	
연 락 처	02-3150-2832